

# 부 천 시 시 립 도 서 관 운 영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9년 11월 13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9년 11월 16일

○ 제157회 부천시의회(제2차 정례회) 제9차 기획재정위원회(2009. 12. 18) 상정

○ 제157회 부천시의회(제2차 정례회) 제9차 기획재정위원회(2009. 12. 18) 원안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시립도서관장 이진선)

가. 제안이유

- 「도서관법」의 일부개정(법률 제9528호, 2009. 3. 25. 공포 · 2009. 9. 26. 시행)에 따른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을 적시에 정비하여 법규의 적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,
-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문장을 시민들이 잘 이해하기 쉽게 보완 · 정비 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상위법 조문에 맞는 목적 및 정의규정을 개정함.  
(안 제1조, 제2조 제1항)

## 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특이사항 없음.	○ 특이사항 없음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없음  있음

나. 반대토론

없음  있음

5. 심사결과

원안의결

6. 소수의견

없음  있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없음  있음

## 부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부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”를 “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시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부천시 시립도서관(이하 “도서관”이라 한다)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,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,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, 평생교육의 증진 등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“도서관자료”(이하 “자료”라 한다)란 인쇄자료, 필사자료, 시청각자료, 마이크로형태자료, 전자자료,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(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)로서 도서관이 수집·정리·분석·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“의 규정에 의한”을 각각 “에 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3종이상”을 “3종 이상”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고, “3이내”를 “3 이내”로 하며, “당해연도”를 “해당 연도”로 하고,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2조본문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한다.

제13조 중 “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2항 중 “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상 15인이내”를 “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하”로 한다.

제15조 본문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8조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 하고, “관리 업무 담당주사”를 “관리업무담당”으로 한다.

제21조 “관한 필요한”을 “필요한”으로 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부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521호
의결 년월일	2009. 12. 23. (제157회)

제출년월일 : 2009. 11. 16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## □ 제안이유

- 「도서관법」의 일부개정(법률 제9528호, 2009. 3. 25. 공포·2009. 9. 26. 시행)에 따른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을 적시에 정비하여 법규의 적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,
-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문장을 시민들이 잘 이해하기 쉽게 보완·정비 하려는 것임.

## □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 조문에 맞는 목적 및 정의규정을 개정함.(안 제1조, 제2조제1항)

## 부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부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”를 “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시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부천시 시립도서관(이하 “도서관”이라 한다)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,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,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, 평생교육의 증진 등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“도서관자료”(이하 “자료”라 한다)란 인쇄자료, 필사자료, 시청각자료, 마이크로형태자료, 전자자료,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(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)로서 도서관이 수집·정리·분석·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“의 규정에 의한”을 각각 “에 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3종이상”을 “3종 이상”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고, “3이내”를 “3 이내”로 하며, “당해연도”를 “해당 연도”로 하고,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2조본문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한다.

제13조 중 “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2항 중 “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상 15인이내”를 “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하”로 한다.

제15조 본문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8조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 하고, “관리 업무 담당주사”를 “관리업무담당”으로 한다.

제21조 “관한 필요한”을 “필요한”으로 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b>부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</b>	<b>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</b>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부천시시립도서관(이하 "도서관"이라 한다)에 수집 보존된 도서자료 및 시설을 공중에 열람 또는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건전한 육성과 독서증진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·정보의 제공 및 유통의 효율화와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시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부천시 시립도서관(이하 “도서관”이라 한다)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,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,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, 평생교육의 증진 등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"도서관자료"(이하 "자료"라 한다)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·정리·분석·보존·축적하는 도서·기록·소책자·연속간행물·악보·지도·사진·그림등 각종 인쇄자료, 영화필름·슬라이드·음반·비디오물·마이크로형태물·테이프등 각종 시청각자료, 전산화 자료, 공문서의 행정자료, 향토자료 기타 도서관봉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도서관자료”(이하 “자료”라 한다)란 인쇄자료, 필사자료, 시청각자료, 마이크로형태자료, 전자자료,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(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)로서 도서관이 수집·정리·분석·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.</p>



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조 (복사금지 자료의 범위) 다음 <u>각호의 1</u>에 해당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이를 복사할 수 없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	<p>제12조(복사금지 자료의 범위) -- ----<u>각 호의 어느 하나</u> ---- ----- 1. 2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3조 (사용료) 제11조의 <u>규정에 의한</u> 복사 및 인쇄 사용료는 별표 1과 같이하며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.</p>	<p>제13조(사용료) -----<u>에 따른</u> ----- ----- ----- ---</p>
<p>제14조 (도서관 운영위원회) ① (생략) ②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<u>1인</u>을 포함한 위원 10인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. ③~⑤ (생략)</p>	<p>제14조(도서관 운영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<u>1명</u>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하 ----- ③~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5조 (기능) 운영위원회는 다음 <u>각호의 사항</u>을 심의한다. 1.~6. (생략) 7. <u>기타</u> 도서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</p>	<p>제15조(기능)----- <u>각 호</u>----- 1.~6. (현행과 같음) 7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</p>
<p>제18조 (간사)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<u>1인</u>을 두되, 간사는 도서관 <u>관리 업무 담당</u>주사로 한다.</p>	<p>제 1 8 조 ( 간 사 ) ----- -----<u>1명</u> ----- <u>관리업무담당</u> -----</p>
<p>제21조 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<u>관한 필요한</u>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 2 1 조 ( 시 행 규 칙 )-----<u>필요한</u> ----- -----</p>

## <관계 법령발췌서>

### ○ 도서관법

제1조 (목적) 이 법은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,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,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, 평생교육의 증진 등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09.3.25>

1. "도서관"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수집·정리·분석·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·조사·연구·학습·교양·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.
2. "도서관자료"란 인쇄자료, 필사자료, 시청각자료, 마이크로형태자료, 전자자료,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(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)로서 도서관이 수집·정리·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.